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119 |
|----------|------|

발의연월일 : 2017. 9. 6.

발의자 : 장병완 · 주승용 · 김삼화
이찬열 · 김종회 · 최명길
윤영일 · 김두관 · 박주선
신용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과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사업등록은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신고행위가 없음에도 공사업 승계가 되는 듯한 현행 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후 수리된 때에 양도인 등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지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5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5조).
- 나.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5조).
- 다.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 신고되어 수리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7조, 제32조제2항, 제35조 및 제43조).
- 라. 합병무효 판결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함(안 제7조, 안 제41조의2 제3호 신설).
- 마. 등록기준 미신고자는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 등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벌금규정만 삭제함(안 제43조제1호 삭제).
- 바.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짓·부정 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5호 전단 중 “취소된”을 “취소(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사업의 승계)”를 “(공사업의 양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사업자는 다음”으로, “자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를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가 신고되어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되어 수리될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공사업을 양수한 자나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가 신고되어 수리된 때에는 양도인 또는 피승계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 자 및 그 상대방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u>특별시장</u>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 ----- ----- ----- <u>특별시장</u>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5조(결격사유)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 5. ----- <u>취소(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u> --- ----- ----- -----.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제7조(공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u>공사업자는 다음</u> -----경 |

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가 신고되어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되어 수리될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 | |
|-----------------------------|---|
| | <p><u>공사업을 양수한 자나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u></p> |
| <u><신 설></u> | <p><u>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u></p> <p><u>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
| <u><신 설></u> | <p><u>⑤ 제4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가 신고되어 수리된 때에는 양도인 또는 피승계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u></p> |
| 제3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생략) | 제3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 |
|--|--|
| <p>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u>3.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의 수리</u></p> <p>4. ~ 9. (생 략)</p> <p>③ (생 략)</p> <p>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u>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1. ~ 3. (생 략)</p> <p><u>4.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u></p> <p>5. ~ 7. (생 략)</p> <p><u><신 설></u></p> | <p>②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u> 4.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수료)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u> 5. ~ 7. (현행과 같음) <u>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u></p> |
|--|--|

| | |
|---|--|
| | <p><u>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u></p> <p><u>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u></p> <p><u>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u>4. 제10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u></p> |
| 제42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p>제42조(별 칙) ----- ----- ----- -----.</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

| | |
|--|---|
| 4. ~ 7. (생 략)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u> 2. (생 략) 3. <u>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u> 4. ~ 11.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 ----- -----.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3. <u>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4. ~ 11. (현행과 같음) |
|--|---|